

#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958
------	-----

2019년 12월 20일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8월 7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다. 상정결과 :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
(2019년 11월 26일 상정·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유연식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- 이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 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### (1)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서울문화재단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」

3) 필 요 성 :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 
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4) 사무내용

-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

-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

-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

-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

- 지역문화의·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### (2)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

1) 소 재 지 :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

2) 규 모 : 대지 1,520.2 $m^2$ , 건물 2,367.41 $m^2$  (6층 건물)

3) 전경 및 위치도



## 다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#### 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<sup>1)</sup>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#### 나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·운영되고 있음.

#### <최근 3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>

구분		(단위 : 천원)		
		2018년	2019년	2020년(안)
세 입	자체수익	1,821,535	1,501,220	995,000
	이자수익	969,789	622,210	296,699
	사업수익	456,817	518,610	519,845
	사업외수익	394,929	360,400	178,456
	<b>서울시 출연금</b>	<b>42,026,600</b>	<b>50,057,000</b>	<b>60,846,000</b>
	잉여금수입	6,659,757	5,227,996	6,127,000
	기본재산 사용	1,370,647	1,000,000	0
	기본재산 사용(청사매입관련)	60,000,000	12,310,000	0
	전기이월액	463,501	8,493,009	0
	소 계	112,342,040	78,589,225	67,968,000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 
이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 규정임.

## 다. 출연규모의 적정성

- 서울문화재단 출연금”은 전년대비 21.6%인 107억 8,900만원이 증액된 608억 4,600만원이 편성되었음.
- 주요 증액 사유는 기존사업의 확대 개편(34억 9,000만원)으로 이는 예술창작 및 예술기반지원이 90억원에서 108억원으로 18억원 증가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이 25억원에서 41억 9,000만원으로 16억 9,000만원 증가했기 때문임.
- 또한 신규사업(67억9,000만원)으로 용산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(18억원), 청년예술청(13억 5,000만원), 예술청온라인시스템개발(7억 5,000만원), 문래예술공장리모델링(7억 7,000만원), 잘생겼다서울\_문화비축기지(21억 2,000만원)이 편성되었음.
- 서울문화재단은 중앙정부의 문화자치·분권의 기초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광역 일반회계 이양,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이관에 따른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증대, 기초문화재단 설립 증가(2020년 21~23개 예상) 등 생활권역 문화서비스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.
- 특히 올해 초에 예술인공모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예술현장에 적합한 공모사업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해온 바 내부적으로는 적정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유사 기능과 중복 사업의 지속적 통합 노력을 통해 사업개수 적정화가 필요할 것임.

또한 거리예술축제, 서커스축제 등 재단 전략사업의 육성 및 강화가 필요하며 다빈치프로젝트 등 미디어 기반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할 것임.

이와 더불어 장애·비장애 동행 프로젝트 ‘같이 잇는 가치’와 같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5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- 나. 이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1) 사무명 : 서울문화재단 출연금
- 2) 추진근거
 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3) 필요성 :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#### 4) 사무내용

-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
-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
-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
-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
- 지역문화의·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#### 나.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

2) 규모 : 대지 1,520.2 $m^2$ , 건물 2,367.41 $m^2$  (6층 건물)

3) 전경 및 위치도



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양윤미 (☎ 2133-2531)